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43

2024년 6월 2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5월 27일, 김형재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형재 의원)

### 가. 제안이유

-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며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2)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3)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4)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5)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6)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7)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 요

- 본 제정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중점관리대상,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통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 제정안 주요 내용

조 문	주 요 내 용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li> </ul>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름.</li> </ul>
제3조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li> </ul>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li> <li>• 포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li> <li>-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li> <li>-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li> </ul>
제5조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가능.</li> <li>•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가능.</li> </ul>
제6조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 가능.</li> <li>•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li> </ul>
제7조 (중점관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시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li> <li>-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li> <li>-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li> <li>-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li> </ul> </li> </ul>
제8조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 가능.</li> </ul>
제9조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가능.</li> </ul>
제10조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 가능.</li> </ul>

## ■ 「중대재해처벌법」 상 서울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법 제2조제9호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서울특별시시장 (이하 “시장”)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며,
- 법 제4조2)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것으로 시장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관련 市 대상사업장은 본청 및 사업소 등 총 41개 사업장임([표] 참조).

[표] 市 본청 및 사업소(총 41개 사업장)

연번	시설물명	연번	시설물명
1	본청	21	동부도로사업소
2	보건환경연구원	22	서부도로사업소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2)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번	시설물명	연번	시설물명
3	소방재난본부	23	남부도로사업소
4	아리수본부	24	강서도로사업소
5	미래한강본부	25	중량물재생센터
6	서북병원	26	난지물재생센터
7	어린이병원	27	성동도로사업소
8	은평병원	28	북부도로사업소
9	서울대공원	29	서울시립과학관
10	서울식물원	30	품질시험소
11	서울역사박물관	31	서울도서관
12	서부공원여가센터	32	아동복지센터
13	중부공원여가센터	33	농업기술센터
14	동부공원여가센터	34	인재개발원
15	북부공원여가센터	35	도시기반시설본부
1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6	데이터센터
17	서울시립대학교	37	역사편찬원
18	한성백제박물관	38	공무원수련원
19	서울시립미술관	39	차량정비센터
20	서울공예박물관	40	서울기록원
-	-	41	의회사무처

- 또한, 법 제5조3)에 따르면 시장은 시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한편, 법 제9조4)는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것으로 시장은 시가

3)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935개소, 공중교통수단(도시철도차량) 17대, 원료 및 제조물(정수센터, 식당, 병원 등) 82개소로 총 1,034개소(대)임 ([표] 참조).

▣ 중대시민재해 총괄 현황('24.4.1.기준)

- 1,034개소(공중이용시설 935, 공중교통수단 17, 원료·제조물 82)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중이용시설(935개소)

구분	도로교량	상수시설	도물	도로터널, 지하차도	업무시설	복구조물	옹벽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복건축물	합물	
개소	376	119		95	67	51	35	35		26	
구분	수련시설	철역(주차장)	도실	노요양노유자시설	인공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실체육시설	내설	의료기관	절토사면	철도터널
개소	20	18		15		13	12	10	9	9	
구분	대형건축물	문집화시 및 시설	어린이집, 어린이 시설	하처리 시설	수설	하천 시설	유기시설기 및 구	판매 시설			
개소	6	5	4	4		3	2	1			

▶ 공중교통수단(17대)

- 도시철도차량 17대

▶ 원료 및 제조물(82개소)

- 식품 및 의약품 취급시설(식당 및 병원 등), 상수도 시설(정수센터 등)

구분	계	병원	청소년센터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정수센터	기술교육원	연수원	어린이집	화장시설
개소	82	11	10	28	18	6	4	2	1	2

-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 시는 '21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해 중대재해 예방·대응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비중에 있으며,
-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교육 및 홍보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본 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이미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기술 지원 및 지도, 교육 및 홍보 등 사항들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음.

## ■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용어정의에 관한 것으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법 제2조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제조물”,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공중이용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p>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p> <p>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p> <p>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p> <p>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p>
공중교통수단	<p>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p> <p>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p> <p>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p> <p>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p> <p>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p> <p>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p>
제조물	<p>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p>
종사자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p> <p>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p> <p>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p>
사업주	<p>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p>
경영책임자등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p> <p>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p>

## 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포함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항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시행 대상을 중대산업재해 관련한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 관련한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으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앞서 제시된 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상사업장은 41개소이며,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은 1,034개소(대)로 각각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됨.
- 한편,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4.6.4.~6.8.) 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 법 제4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하는 것’과 관련한 대상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를 것이므로 동 제정안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복 및 혼란 등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 외에는 법에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시장에게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동 제정안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시행 대상은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시장에게 의무가 부과된 중대재해 예방 대상(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이며,
-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민간 경영책임자등이 해당 민간사업장의 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이 필요할 것이고 다만, 시가 민간영역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활동을 본 조례안 제9조와 같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가능하리라 사료됨.

### 3)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안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따라서 동 조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각종 관련 현황 파악 등의 실태조사와 유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바람직하다 하겠음.
- 참고로, 시는 '23.1월부터 9월 동안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약 2만 5천여 개소([표] 참조)를 파악한 바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확대 관련하여 '23.9월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sup>5)</sup>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됨.

[표] 서울시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 25만여 개(추정)

#### 5) 중대재해법 적용확대 관련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23.9.)

- 市 50인 미만 민간사업장 50개소(건설, 제조, 서비스, 운수·통신) 표본 조사
  -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준비 여부, 애로사항 등
- ⇒ 준비못함(56%), 유예필요(82%)

\*미준비사유 : 의무이해 어려움(37.0%),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부족(13.0%)

구 분	적용대상 시설	개소수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법 (5.1천개소), 시설물법(2.7천개소), 다중이용업소(1.0천개소)	7,130
공중교통수단	운송용 항공기(91기)	91
원료 및 제조물	식품 등(211천개소), 의료기기(24천개소), 약품(7.7천개소), 화학물질·화학제품 (2.9천개소)	246,790
합 계		254,011

#### 4)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안 제6조)

- 안 제6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안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이는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미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 내 ‘중대재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재난안전관리실장)을 포함하여 10명 내

외로 상정 안전에 따라 분야별로 적합한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방침으로 정하고, 그 주요기능은 중대재해 전반에 대한 시정 자문, 기타 안전정책 및 안전문화 관련 정책개발 자문 등에 해당함.

## 5) 중점관리대상(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시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먼저, 제1항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시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 이미 제시된 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상사업장 현황에서와 같이 시 소관 사업장 41개소가 대상이며, 이 중 중점관리대상을 지

정하여 관리토록 하려는 것임.

- 다음으로, 제2항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 또는 제조물 취급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 이미 제시된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상 공중이용시설 935개소, 공중교통수단 17대, 원료 및 제조물 취급시설 82개소가 대상이며, 이 중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음.
- 그 밖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 보다 각별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리효율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파악되어 바람직하다 사료됨.

## 6) 컨설팅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안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음.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이는 시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점관리대상과 관련한 위탁, 대행 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포함된다 하겠음.

## 7)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 안 제9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여기서, 교육·홍보 대상을 시장이 경영책임자등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한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 이는 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관할지역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을 대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사료되며, '24.1.27일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따라 민간에 대한 교육과 홍보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할 수 있는바,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 종합의견

- 동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통계 등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 또한, '22.1.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시에서 이미 현장에서 적용 또는 시행 중에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을 통해 서울시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형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843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김형재, 김길영, 김용호,  
김춘곤, 남창진, 박성연,  
박철성, 송도호, 이상욱,  
한·신 의원(10명)

## 1. 제안이유

-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며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시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통계)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실태조사), 제8조(컨설팅 지원) 및 제9조(교육 및 홍보)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중대재해예방과)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도 중대재해 예방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5조	서울시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이행 실태점검)(붙임1)	237,650 (47,250)
제8조	중대재해감시단 운영(붙임2)	107,300
제9조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붙임3)	166,000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1] 2024년 서울시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01 ~ 2024.12.
-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
  - 산업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및 운영
    - 상시노동자 50명 이상 사업장 대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정
    - 상시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산업보건의 위축 및 운영
  -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의무 이행실태 점검 실시 (2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본청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 실시

## [붙임 2] 2024년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 운영 사업설명서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01 ~ 2024.12.
- 지원대상 :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원(중대재해감시단원, 안전관리자문단 소속 전문가)
- 추진방법 : 중대재해감시단 25명 운영(1일 11개반, 주5일, 반별2명, 2개 현장)
- 주요내용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합동점검
  - 계절적, 사회적 재난발생 우려지역 안전점검
  - 점검결과 지적사항 안전조치명령 및 불이행자 조사

### [붙임 3] 2024년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사업설명서

#### □ 사업내용

##### ○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용역(상·하반기 총 2회)

- 사업기간 : 2024.01 ~ 2024.12.
- 점검대상 : 27개 실·본부·국 및 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상황 여부 점검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대비를 위한 홍보물 제작

- 사업기간 : 2024.01 ~ 2024.12.
- 배포대상 :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등
- 인쇄부수 : 4,000부
- 소요예산 : 8백만원

##### ○ 위원회 수당 및 자문비

- 자문기간 : 2024.01 ~ 2024.12.
- 참석 및 자문대상 : 안전자문회의 위원, 법무법인,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 자문내용 :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서울시 대응방향 전반에 관한 내용
- 소요예산 : 12백만원

##### ○ 유해위험요인 우수아이디어 제출 직원 유공 포상금

- 사업기간 : 2024.01 ~ 2024.12.
- 주요대상 : 서울시 직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주요내용 : 2024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신고 또는 점검관리 개선 아이디어 등 제안 직원에게 상장 및 상금 지급
- 소요예산 : 16백만원

##### ○ 언론협력사업

- 사업기간 : 2024.01 ~ 2024.12.
- 주요대상 : 일반시민
- 주요내용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업 언론사 광고홍보 등
- 소요예산 : 30백만원